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54호 2020. 10. 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19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기준 (안 제31조 ~ 제34조)

- 지정의 절차, 신청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 제42조)

- 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의 운영 및 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
- 운영 세칙

3. 개정안 : 불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전화 : 054-650-6091, 팩스 : 054-650-6099
- 전자우편 : karrra0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기준 (안 제31조 ~ 제34조)

- 지정의 절차, 신청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 제42조)

- 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의 운영 및 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
- 운영 세칙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154(2020.08.28.)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2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0월 중 입법예고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사. 성별영향평가 : 9월 중 평가 의뢰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5조에 따른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1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u>
<u><신 설></u>	<u>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5조에 따른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u>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u> <u>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u>

<신 설>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신 설>

<신 설>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
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
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
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
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
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

<신 설>

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
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
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
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
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
자인 관련 전문가

<신 설>

<신 설>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 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신 설>

<신 설>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

<신 설>

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

<u><신 설></u> <u>제31조</u> (생 략)	<u>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u> <u>급할 수 있다.</u> <u>제4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u> <u>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u> <u>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u> <u>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8장 보칙</u> <u>제43조</u> (현행 제31조와 같음)
--	--

참고 1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3.부터 13.까지 생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 마 을 경 제 과	
연 락 처	650-6091